

#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790번
- 제안자 : 강동길 의원 외 9명
- 제안일 : 2019년 7월 30일
- 회부일 : 2019년 8월 13일

### 2.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음.

###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돋기 위한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재정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단체의 가출청소년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19.8.19.~2019.8.26)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청소년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안 제3조)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안 제5조, 안 제6조),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7조, 안 제8조), 통합지원체계(안 제9조) 등을 규정하여 가출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빌의되었음.
- 2017년 조사 연구에서 최근 1년간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4.2% 수준이며, 2019년 2/4분기 서울시의 10~19세 청소년 수는 약 83만여명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는 약 3만 5천여명의 청소년들이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sup>1)</sup>되고 있음.

〈 서울시 연령별 인구현황 - 주민등록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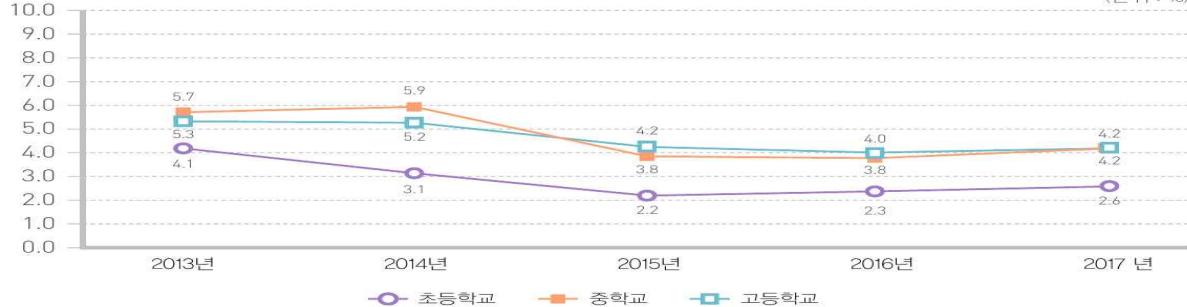
(단위:명)

합계	0~9세	10~14세	15~19세	20~39세	40~59세	60~79세	80세 이상
9,757,144	676,064	374,685	461,918	2,990,158	3,122,046	1,837,889	294,384

※ 출처 :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수(연령별/구별) 재구성

〈 최근1년간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단위 : %)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추산치

- 청소년 가출의 원인으로 가족과의 갈등(70.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가출기간은 1일에서 5일 사이가 대다수(87.5%)이나, 1개월을 넘기는 비율도 5.7%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의 가출청소년(7.8%)만이 청소년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보호시설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83.1%)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 청소년 가출의 원인 〉

	가출에 대한 호기심	가족과의 갈등	어려운 가정 형편	학교 다니기 싫어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	친구나 선후배 권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서	기타
전국	2.7%	70.0%	0.8%	3.2%	3.9%	0.7%	7.1%	0.5%	11.1%
서울	9.0%	70.7%	1.8%	2.0%	5.4%	2.0%	2.0%	0.0%	7.3%

※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자료갱신일 2019.4.11.)

### 〈 가장 최근에 한 가출의 기간 〉

	하루	2~5일	6~9일	10~30일	한 달 이상
전국	62.8%	21.0%	5.8%	3.7%	6.7%
서울	64.2%	23.3%	5.2%	1.7%	5.7%

※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자료갱신일 2019.4.11.)

### 〈 가출 후 이용기관 〉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 국	88.1%	4.9%	1.5%	0.5%	0.3%	4.7%
대도시	87.2%	7.8%	0.0%	0.0%	0.0%	5.0%
중소도시	88.9%	2.4%	1.8%	0.9%	0.7%	5.3%
읍면지역	87.6%	4.4%	8.0%	0.0%	0.0%	0.0%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갱신일 2019.2.18.)

### 〈 가출 후 이용기관 서비스 만족도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 국	12.5%	13.7%	45.9%	27.9%
대도시	7.1%	9.8%	47.0%	36.1%
중소도시	0.0%	20.9%	54.4%	24.7%
읍면지역	100.0%	0.0%	0.0%	0.0%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갱신일 2019.2.18.)

- 이러한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대부분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가출 청소년의 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산만 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들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절도·폭행·성매매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서울시가 청소년가출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나. 조례안의 구성 및 조문 내용별 검토

- 본 제정안은 총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계획 및 사업, 시설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체계 활용을 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 〈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 〉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	제1조(목적) 제3조(시장의 책무)	제2조(정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청소년복지설 설치·운영) 제8조(청소년거점쉼터 설치·운영)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6조(지원사업),
보칙에 해당하는 부분	제10조(시행규칙)	
부칙		

- 안 제1조는 본 제정안의 상위법과 근거를 밝혀 조례 목적이 가출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제3호는 보호자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친권자와 법정 대리인을 동시에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음.
- 통상 친권자는 부모로 이해할 수 있으나, 청소년이 제한능력자라는 측면에서 친권자와 후견인은 법정대리인<sup>2)</sup>으로 통칭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부모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이혼한 경우, 혼외자인 경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 친권은 부모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정하여<sup>3)</sup>, 부 또는 모 한명에게만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친권자를 법정대리인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한능력자 :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무능력자)라고 한다.

#### ※ 법정대리인의 종류

- 친권자('민법' 제909조·제911조·제920조)와 후견인('민법' 제931조·제932조·제936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3조·제24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23조·제1053조)
- 법정대리인은 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 
- 2) 「민법」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3) 「민법」 제909조(친권자)
    -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호자는 안 제6조제1호에서 가출예방 교육의 대상으로 단 1회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에서 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여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주된 개념으로 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2조제3호의 ‘보호자’ 관련 〉

제정안	수정의견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 안 제2조제4호와 안 제2조제5호에서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라는 표현은 과도한 축약으로 인해 온전한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가정·학교로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출하여’로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의견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u>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u>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u>가정·학교로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출하여</u>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u>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u>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u>가정·학교로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출하여</u>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안 제3조는 시장이 가출예방, 복귀상담, 시설 설치·운영, 사후지원에 대해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정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가출시 이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의 지원<sup>4)</sup>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4조는 10세~19세, 또는 21세까지의 위기 10대여성 지원<sup>5)</sup>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각 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상충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는 안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이행과 안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4)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 5. 기타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5)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 1. 십대여성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 2.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 3.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건강 교육 및 심리·정서 지원 등
      - 4. 위기 십대여성의 성·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등
      - 5.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 6.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 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7. 성매매 예방교육, 실무자 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 8.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다만, 가출청소년은 신체적 위험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조속히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나, 지원계획에는 가출청소년 발견 또는 발굴을 위한 사업이 누락되어 있는바, 가출청소년의 발견 프로그램의 개발·개선 사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또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도 다른 분야의 청소년계획들과 균형과 조화 속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소년관련 계획(청소년활동 진흥계획, 청소년 인권 종합계획,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등)의 기본이 되는 종합적이며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정부의 청소년관련 부처에서는 5년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하는 기관·시설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sup>6)</sup>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안 제6조제1호부터 제8호는 가출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로 복귀하고 사회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6)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가출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출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가출청소년의 보호
6. 가출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 지원
7. 가출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
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다만, 통상 예방-발견-치료-지원 등의 순서로 가출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있어 조문의 순서를 지원순서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음.
- 안 제6조제3호는 안 제8호와 내용이 유사하고, 안 제10조의 시행규칙을 통해 보호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안 제6조 각호의 순서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음.

#### 〈 안 제6조의 제3호와 제8호 비교 〉

안 제6조제3호	안 제6조제8호	수정의견
3. 가출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 지원	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5.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 재·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 안 제6조제6호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보이나, 교육문화는 교육지원, 문화지원, 복지지원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운데 점('·')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6조제6호 〉

제정안	수정의견
6. 가출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 지원	6. 가출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 지원

- 안 제7조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청소년시설 조례')는 청소년 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수련시설, 이용시설 등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위탁, 재정, 지도·감독 등을 규율하고 있어, 안 제4조<sup>7)</sup>에 따라 청소년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시설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거점쉼터를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시설 조례에는 거점쉼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거점쉼터의 지정과 업무에 대해서 본 제정안에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거점쉼터의 지정 및 운영은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정기적 보완(교육·훈련의 실시), 청소년에 대한 쉼터 홍보, 실태파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

7)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특히, 쉼터별 보호기간(일시, 단기, 중·장기)이라는 한계로 보호대상 청소년은 쉼터 입·퇴소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는 쉼터의 한계 및 보호기간 공백 등의 문제를 거점쉼터의 운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거점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는 비용추계에서 누락되었는바,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본 제정안의 비용추계 세부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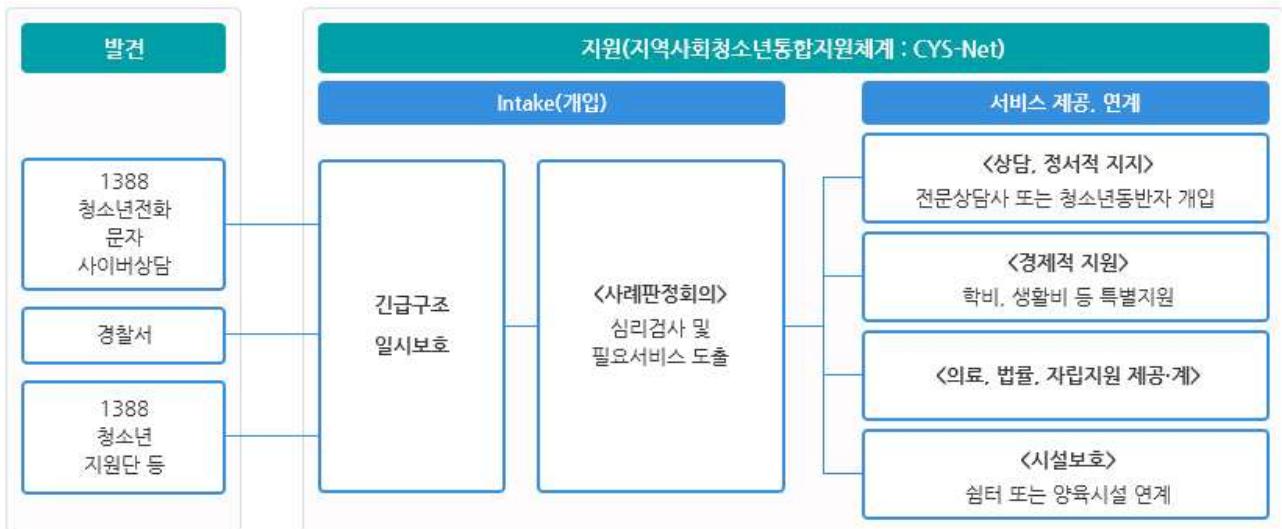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비	$\approx 100,000\text{천원} = 20,000\text{천원} \times 5\text{년}$
- 연간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비	= 20,000천원
○ 쉼터종사자 처우개선·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및 훈련사업비	$\approx 40,000\text{천원} = 8,000\text{천원} \times 5\text{년}$
- 연간 조사·연구사업비 및 교육·훈련사업비	= 8,000천원
○ 유관기관·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비	$\approx 10,000\text{천원} = 2,000\text{천원} \times 5\text{년}$
- 연간 네트워크 구축비	= 2,000천원 = 500천원(네트워크 활동비) + 1,000천원(모니터링비) + 500천원(기타진행비)
○ 가출청소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approx 400,000\text{천원} = 200,000\text{천원} \times 2\text{회}$
- 가출청소년의 실태조사는 3년에 1번으로 가정	

- 안 제9조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sup>8)</sup>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8)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사회자원(교육청, 학교,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보건소, 수련관, 쉼터, 아동센터 등) 등)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상담·보호·교육·자립 등)하는 사업으로, 거점쉼터는 쉼터간 연계,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기관을 연결하는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 흐름도 〉



- 다만,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용시 지역의 자원(voluntee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과 종교, 학교 등이 함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조성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거점쉼터(안 제8조)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청소년의 가출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것으로, 가출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임범조사관	정찬일
------	-----	-------	-----